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(이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516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1. 1.

발 의 자 : 이수진 · 정태호 · 송옥주
김정호 · 박홍배 · 이연희
조 국 · 최기상 · 한정애
송재봉 · 민형배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을 방지하고 의료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가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주체로는 규정되어 있지만,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는 상황임.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실현이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 지정 주체를 시장·군수·구청장까지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정·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야간·휴일 소아진료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(안 제34조의2제1항).

법률 제 호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4조의2제1항 중 “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”을 “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4조의2(야간·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지정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</u> 응급실 과밀화 해소 및 소아환자에 대한 의료 공백 방지를 위하여 「의료법」 제3조에 따른 의료 기관 중에서 야간 또는 휴일에 소아환자를 진료하는 야간·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	제34조의2(야간·휴일 소아 진료 기관의 지정) ① <u>보건복지부장관,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②·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